

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(제74조제2항 관련)

교육의 종류	교육 내용	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	교육 시간
기본교육	감리업무 관련 규정·기준 및 지침의 이해 증진과 감리업무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	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경우	40시간 이상
전문교육	감리 총괄업무의 수행, 감리원 지도 등 수석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	수석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경우	50시간 이상
계속교육	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유지를 위한 교육	모든 등급의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	3년마다 40시간 이상